

#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0월 7일 강일원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 2009년 10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0. 15)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기획재정위원회 강일원의원)

### 제안이유

- 부천시 조례 제2405호 2009. 6. 8. 공포·시행 된 조례 조문 중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오기 및 용어 정의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개정

- “주관부서”라 함은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 등의 업무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 로 개정함. (안 제2조 제9호)

나. 적용범위 개정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중 추정감정평가금액 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한로 개정함. (안 제3조)

다. 운영계획의 수립 개정

- 감정평가업자 중 부천시 관내에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의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를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함. (안 제4조 제3항)

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개정

- 감정평가업자를 2명 이상 선정 시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1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를 삭제함. (안 제6조 제2항)

마. 위원회의 설치 개정

- 부천시감정평가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부천시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로 개정함. (안 제7조 제1항)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시 몇 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하는지?</li> <li>· 본 조례 제정후 바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제정 당시에는 문제점이 없었는지?</li> <li>· 대상사업을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정하였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건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 1명, 토지등 소유자 1명 등 2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실시함.</li> <li>· 제정 당시에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관내 14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나 1개 업체만 우수업체이고 나머지는 부실하며, 헌법에서 정한 평등성에 부합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li> <li>· 향후 예상사업 조사에 따른 것임.</li> </ul>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 등의 업무”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로 한다.

제3조 중 “사업에”를 “사업 중 추정감정평가금액 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부천시 관내에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의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를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부천시감정평가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부천시감정평가 업자선정위원회“로 한다.

#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03호
의결 년월일	2009. 11. 23. (제157회)

발의년월일 : 2009. 10. 7.

발 의 자 : 강일원의원등7인

### □ 개정이유

- 부천시 조례 제2405호 2009. 6. 8. 공포·시행된 조례 조문 중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오기 및 용어 정의 개정을 통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함임.

###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개정

- “주관부서”라 함은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 등의 업무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 로 개정함. (안 제2조 제9호)

#### 나. 적용범위 개정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를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중 추정감정평가금액 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적용한다. 로 개정함. (안 제3조)

#### 다. 운영계획의 수립 개정

- 감정평가업자 중 부천시 관내에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의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를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함. (안 제4조 제3항)

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개정

- 감정평가업자를 2명 이상 선정 시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1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삭제함. (안 제6조 제2항)

마. 위원회의 설치 개정

- 부천시감정평가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부천시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로 개정함. (안 제7조 제1항)

개정 조례안 :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그 밖의 참고사항

##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호 중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 등의 업무”를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로 한다.

제3조 중 “사업에”를 “사업 중 추정감정평가금액 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로 한다.

제4조 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부천시 관내에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의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를 “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2항을 삭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부천시감정평가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부천시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 ~ 8(생략)</p> <p>9. “주관부서”라 함은 <u>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협의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u></p>	<p>제2조(정의)</p> <p>1 ~ 8(현행과같음)</p> <p>9. ----- <u>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을</u> ----- -----</p>
<p>제3조(적용범위)</p> <p>감정평가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시장이 시행하는 <u>사업에 적용한다</u></p>	<p>제3조(적용범위)</p> <p>----- <u>사업 중 추정 감정평가금액 총액이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u> -----</p>
<p>제4조(운영계획의 수립)</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u>참여감정평가업자의 명단은 감정평가업자 중 부천시 관내에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를 우선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의 사무소의 주소를 둔 자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u> <u>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u></p>	<p>제4조(운영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고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정평가법 제38조에 따른 인가 취소 등의 배제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운영계획에 반영 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 (안)
<p>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p> <p>① (생략)</p> <p>② <u>감정평가업자를 2명 이상 선정 시 부천시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 1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u></p> <p>제7조(위원회의 설치)</p> <p>① ----- <u>부천시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u> -----</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생략)</p>	<p>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lt;삭제&gt;</u></p> <p>제7조(위원회의 설치)</p> <p>① ----- <u>부천시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